



2016/11/21  
17:56:24  
KST



발급번호 : 201641630000384472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16/ 11/ 2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주소	면적(m <sup>2</sup> )		
			전화번호	지번	지목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m <sup>2</sup>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692-7 대	208.0
지역 · 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등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 로)(접합)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등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반환경여구역주변지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소로3류(폭 8M 미만)</li> <li><input type="checkbox"/> 준보건산업</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준주거지역</li> <li><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li> <li><input type="checkbox"/> 법정동</li> <li><input type="checkbox"/> 중로2류(폭 15M~20M)</li> <li><input type="checkbox"/> 중로3류(폭 12M~15M)</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준공업지역</li> <li><input type="checkbox"/> 제1종일반주거지역</li> <li><input type="checkbox"/> 소로2류(폭 8M~10M)</li> </ul>	
		축척 1/120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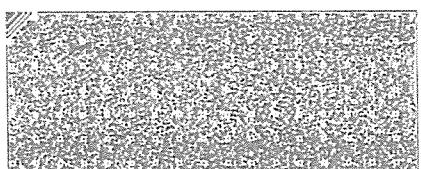
2016/ 11/ 21

경기도 양주시장



수입증지붙이는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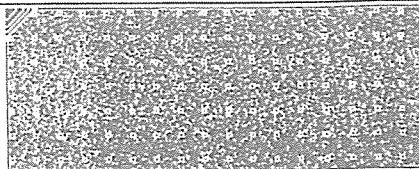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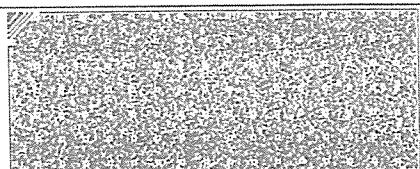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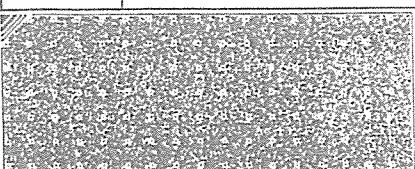


발급번호 : 201641630000384472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16/ 11/ 21

	<p>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p> <p>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전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p> <p>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축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2016/11/21  
17:58:31  
KST



발급번호 : 201641630000384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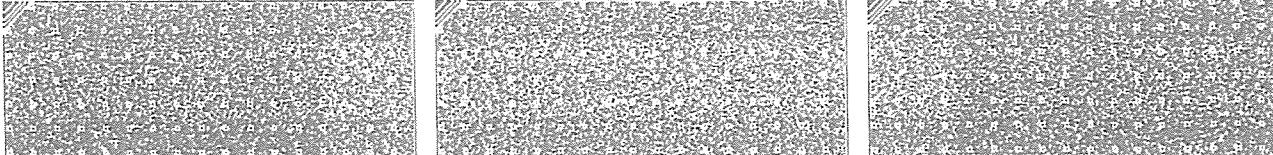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16/ 11/ 21

처리기간  
1 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05-7	대	112.0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물의 바랍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반환경여구역주변지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input type="checkbox"/> 소로3류(목 84미만) <input type="checkbox"/> 농보전신지 <input type="checkbox"/> 준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지구단위계획구역 <input type="checkbox"/> 법정동 <input type="checkbox"/> 종로2류(목 134~20.0) <input type="checkbox"/> 종로3류(목 124~15.0) <input type="checkbox"/> 준공업지역 <input type="checkbox"/> 제1종일반주거지역 <input type="checkbox"/> 소로2류(목 84~10.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6/ 11/ 21					
경기 도 양 주 시 장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민원24(minwon.go.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 또는 민원24 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 201641630000384474

발행매수 : 2/2

발급일 : 2016/ 11/ 21

유의사항	<p>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p> <p>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p> <p>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5.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p>※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